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촬영물 범죄 등의 사범협조자 형벌 감면〉

■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687호)

2025.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유상범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14.
3. 회 부 일 : 2024. 10.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9년 적발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하여 대응을 강화하였으나, 최근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적발되고,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Deep Fake) 허위영상물이 초중고생까지 침투하는 등 기존의 법제만으로는 관련 범죄의 근절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나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범죄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범행이 텔레그램 등의 보안메신저를 통해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공범들 사이에 “우리만 비밀을 지키면 절대로 발각되지 않는다.”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임. 이 합의는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 공범과 피해를 눈덩이처럼 증증시키는 악순환의 단초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범
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범죄에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죄은닉 합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타파하
고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
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III. 검토의견

-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제14조의2)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사건에 관한 타인의 범죄에 관한 진술, 증언, 자료제출 또는 제보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생략)	제20조(형벌의 감면에 관한 특례)
<신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현행 법체계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형벌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형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이 있음.

- 자본시장법 제448조의2제1항은 안 제20조제2항과 마찬가지로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증언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본시장법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 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형법」 제52조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자수한 사람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는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의 감면을 인정하고 있음.²⁾

1)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형의 감면 외에 징계·행정처분의 감면, 손해배상청구의 금지 등도 규정하고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형벌 감면에 관한 것은 아니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는 자진신고자 및 수사협조자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 고발의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³⁾

○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는 불법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로, 다수인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하여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하는 경우가 많음.

- 2019-2020년 밝혀진 대규모 불법촬영물 제작·반포 사건(“N번방 사건”)에서는 텔레그램 메신저가 활용된 바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는 비공개·위장 수사를 실시하거나 공범자의 범행 공개를 유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 같은 취지에서 2025. 6. 4.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535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는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 수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률 제2053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제공, 판매 또는 광고. 다만, 제공이나 판매는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성년이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나.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다. · 라. (생략)

-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경우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로부터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그 혐의 입증에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개정안은 범죄 해결에 협조한 공범자에게 형벌의 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적극적 적발 및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이므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범자로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 형벌 감면이라는 인센티브에 중점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공범자 상호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형벌 감면을 허용하여 일반의 법감정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 한편, 개정안은 제14조,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의 사범협조자에만 형벌 감면을 인정하고 있는데, 제14조의3은 제14조, 제14조의2 등에 따른 촬영물·영상물 등을 활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행위의 위험성이나 수사의 곤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4조 등의 죄와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해당 죄도 사범협조자 형벌 감면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법률 제2053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2도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제14조·제14조의2의 죄뿐만 아니라 제14조의3의 죄도 포함하고 있음.
- 다만, 제14조의3은 협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죄에 해당하므로, 행위의 태양에 있어서는 제14조 등과 차이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51